

#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

(의안번호제889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11. 29    고성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11. 30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4. 12. 10    산업건설위원회 상정·부결

### 2. 제정이유

- 주차장법령에 의한 교통관련 과태료 및 각종 징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차장의 확충 사업에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및 제3조)
- 나. 회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다. 회계 관계공무원 책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세입금의 부과징수(안 제6조)
- 마.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금고의 설치(안 제7조)
- 바. 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보조금의 반환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에 의거 설치함이 타당함.

- 조례안 제8조에 보조금지급 규정이 공사비의 80%이내, 한가구당 200만원 이하로서 충분한 검토와 타당성을 심사해야 할 것임.
- 조례안 제9조에서 보조금은 주차장의 용도변경, 사용목적위배, 시설물 변경 사유 등으로 보조금 지급 사유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시기는 2년으로 한정함은 보조금 지급 목적과 경과 기간에 대하여 심사 되어야 할 것임.
- 조례안 제2조의 세입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고성군주차장조례에 위임된 내용으로 조례에 근거한 세입이어야 할 것임에도 주차장법을 적용한 착오임.
- 주차장법 제9조제1항, 제3항과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조례 제3조의 내용임.
- 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 제18조의 내용임.
- 법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조례 제17조(과징금처분)는 '99.12.27일 삭제하였으므로 징수근거가 없음.
- 이상과 같이 검토결과 고성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미비점이 많으므로 재정비 이후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습니다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차장조례안 내용중 공사비의 80%, 가구당 200만원 지원의 문제와 주차장법 제24조의 2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삭제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을 보완할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주차장관리조례와 주차장법이 배치되는 부분도 있다. 주차장조례 설치 후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?
- 답 : 그렇게 생각합니다.

## 6. 토 론

- 박태훈위원 : 주차장조례안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- 박태공위원 : 특별회계 설치안의 보조금 집행부분에 민원 우려가 있고 조례와 주차장법 배치부분도 있으므로 부결처리가 좋겠습니다.
- 위 원 1 : 동의합니다.

## 7. 심사결과

- 2004. 12. 10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하였음.